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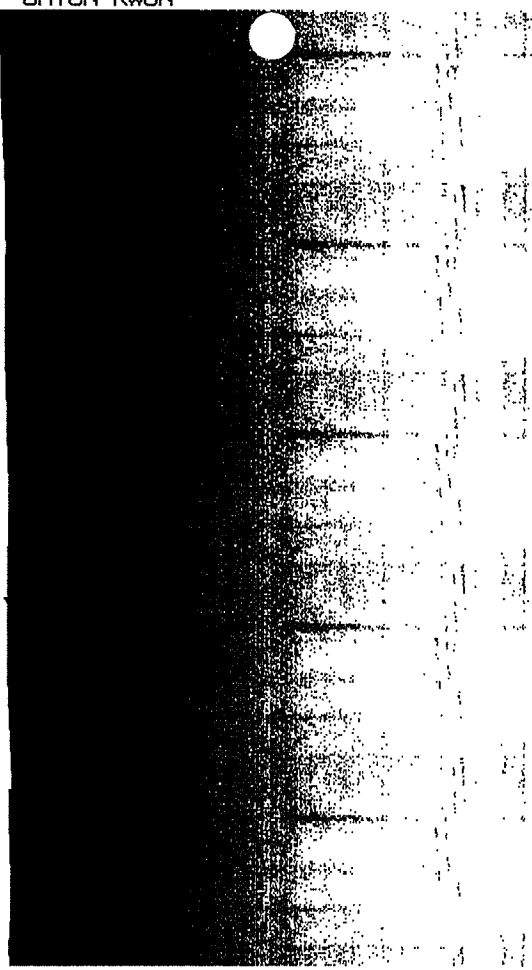
# 님, 정용소송 목적기각요청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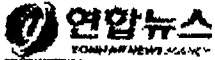
## 나불\*등 이유

3239331747  
 \*등은 일반 기업의  
 기각요청을 거부  
 A 민사지법 판사는  
 원안 정제원(주)에  
 해 소송을 재판할 처  
 는 일본 다이헤이오

(大수判) 시멘트의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서를 항복 변종인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제 정용 소송은 LA 민  
 사지법에서 사실심리, 재판준비 증거  
 수집 등이 계속 가능하게 됐다.  
 리·격만 판사는 명령사에서 ▲한국  
 은 1951년 피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용 피해 원인  
 은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95

년 항일청구권협정은 양국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 법원이 한쪽  
 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제 변종인 손해원 변호사는 "이번  
 법원 명령은 정제 소송 외에 95년이래  
 전수되고 현재 여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한인 정용소송은 물론 중국인파  
 팔리만인 정용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A=연합





출력일시: 2001-09-17 11:28:02

미 법원, 첫 대기업 징용소송 기각 요청 거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미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한인 징용피해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했다.

피터 릭크만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판사는 지난 15일 한인 정재원(79)씨가 기한 징용피해 소송을 재판절차 없이 기각해달라는 일본 다이헤이오(太平洋) 시멘트의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서를 양쪽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씨 징용 소송은 LA 민사지법에서 계속 진행되며 사실심리, 재판준비 증거수집 등이 가능하게 됐다.

릭크만 판사는 18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 한국은 1951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징용 피해 환인은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 법원이 일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강화조약으로 해결한 정치외교적 문제를 미 사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 기업측 주장에 대해 이 소송은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주법(일본 강제노동 손해배상 특별법)에 의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치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 정부와 기업들은 미일강화조약과 한일기본협정으로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법원에 기각요청을 해왔다.

정씨 변호인 신혜원 변호사는 "이번 법원 명령은 정씨 소송 외에 99년이래 접수되고 현재 여러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한인 징용소송은 물론 중국인 필리핀인 징용소송에 직결된 최초의 미 법원 판결로서 지난 2년간 진행된 본 소송에서 원고측에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지금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소송의 진행 및 향후 전개과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적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 해석에 있어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정씨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일본측에 기울었던 미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모든 징용 소송에서 유리한 판례로 적용될 것"이라며 릭크만 판사의 판결은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징용 외에 위안부 등 일본의 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각종 피해소송에서도 원고측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보다 1주일 빨리 나온 이번 명령은 유대인 집단학살(홀로코스트) 보상 케이스와는 달리 대일 전범피해 소송에서 미 정부가 일측을 거들고 미국내 징용소송이 한데 모아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전쟁포로 강제노역 케이스를 모두 기각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정씨는 지난 99년 10월 강제징용 미주 한인회로선 처음으로 일본 시멘트회사 다이헤이오 시멘트(정씨를 강제노동시켰던 오노다 시멘트 후신)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coowon@aol.com

(끝)



출력일시: 2001-09-17 12:28:57

<해설> 미 법원 징용소송 기각요청 거부 의미와 전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미국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기업이 제기한 징용피해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미 법원에 계류중인 징용소송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명령은 유대인 집단학살(홀로코스트) 보상 케이스와는 달리 대일 전쟁범죄 피해 소송에서 미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미국내 징용소송이 한데 모아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가 전쟁포로 강제노역 케이스들 모두 기각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유대인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권변호사 배리 피셔는 "이번 법원 명령은 지난 십수년간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를 열었다"며 "특히 피터 릭크만 판사가 미일강화조약 등으로 한국인 전범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국 정부측 입장을 따르지 않은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릭크만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 판사는 당초 예정일보다 1주일 앞당겨 지난 15일 일본의 세계적 시멘트회사인 다이하이요(太平洋)시멘트가 한인 청재원(79)씨를 상대로 한 징용피해 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서를 양측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릭크만 판사의 거부 사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국은 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인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징용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씨가 미 시민으로 귀화했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측 주장에 대해 조약 체결 당시 정씨는 미 시민이 아니므로 조약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판결은 한국인 뿐만이 아니라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조약 체결 당사국으로 참가하지 못한 국가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임금지급이 완결됐으며 징용소송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일측 주장을 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법원은 당사국 간에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협정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해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풀어줬다.

릭크만 판사는 협정(또는 조약) 해석시 양국이 일치할 경우 미 법원이 받아들이나 각자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경우 한쪽 편을 들어 소송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셋째, 일측은 미국의 삼권분립을 들어 조약 등으로 이미 해결된 정치외교적 사안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주장했으나 릭크만 판사는 한 개인이 추법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미.일 정부가 관여한 정치외교활동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릭크만 판사는 또 미 사법부가 유대인 소송을 기각한 것은 미국이 독일 정부 및 기업과 협상을 적극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데 비해 징용소송의 경우 한.일 간에 아무런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성립여부 결정은 주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릭크만 판사는 지난달 30일 기각요청 공판에서도 강화조약이 캘리포니아주법보다 상위이므로 추법에 근거한 소송제기는 위험이라는 일측 주장에 대해 추법은 지난 50년간 동한시해은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법(2010년까지 시효 연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출력일시: 2001-09-17 12:28:57

정씨 변호인인 신해원 변호사는 "만일 기각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원고가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었다"며 "다른 소송들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징용 외에 위안부 등 일본의 2차대전 당시 전범 피해소송에서도 원고측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릭크만 판사는 정씨 변호인단에 다이헤이요측이 제출을 꺼려온 징용자 명단과 임금대장 등 사실심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허용했다.

coowon@aol.com

(끝)